

[시나리오 1]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고유식별정보

홈페이지 탈퇴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주제]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시 주민등록등본 요구

[문제상황] 몇 개월 전 전자제품에 대해 알아보다가 00전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홈페이지 이용이 불필요한 듯 하여 회원탈퇴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질문] 홈페이지 회원 탈퇴 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해도 되는 건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회원 가입과 동일하거나 보다 쉬운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회원 가입 시에 요구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에 따라서는 회원 탈퇴 시에도 본인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체가입수단(아이핀 등)이나 정부의 주민등록 진위확인서비스(전화 국번 없이 1382, 인터넷 minwon.go.kr) 등과 같이 비교적 간편하게 본인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주민등록등본 등은 본인 외에 가족의 개인정보도 기재되어 있어 추가적인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회원탈퇴시 주민등록등본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

[시나리오 2]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일반정보

이벤트 응모한 명함, 알고 보니 홍보마케팅 자료?

[주제]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명함정보를 홍보마케팅에 활용 여부

[문제상황] 00외식업체 매장에 방문했는데, 입구에 경품행사를 위한 명함 통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명함 통 앞에는 '추첨을 통해 쿠폰을 선물로 드리며,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질문]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명함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이용해도 되는 건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처리자(외식업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 및 거래 현장에서 매번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명함을 주고받거나 명함 통에 명함을 투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명함 등을 제공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으나, '사회 통념상으로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등은 최대한 상세하고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결론] 매장에서 명함 통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함 투입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 항목, 명함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명함투입거부권리 및 거부시의 불이익 등을 명함 통 등에 명확히 게시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명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명함 투입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진 수집·이용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조제3항

[시나리오 3]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의료분야	영상정보

피부과 시술사진이 홈페이지에 홍보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제] 눈이 가려진 피부과 시술 사진, 홈페이지 게재 가능 여부

[문제상황] OO피부과는 홈페이지에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눈을 가리고 시술 부위 중심으로만 게시하였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피부과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는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반 조치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술 전후사진으로 전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술 사진 그 자체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 등의 일부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공개·열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론] 시술 전·후 사진이 신체 일부를 가리고 있다고 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시술사진을 게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Tip]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자료실-분쟁조정사례
(<http://www.kopico.or.kr/data/after/index.js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의료법 제21조

[시나리오 4]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금융분야	일반정보

신용정보회사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주제]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문제상황] 00신용정보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1년 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전국의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저의 소재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질문] 신용정보회사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그 채권추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자의 소재 및 연락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라 하더라도 그 채권추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폭행, 협박, 불공정한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결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 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그 채권추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자의 소재 및 연락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호 단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등 참조)

[시나리오 5]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주택관리 분야	일반정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입주민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

[주제] 건설사와 부동산중개업소 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문제상황]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 후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동·호수와 전화번호, 이름 등을 알고 홍보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어떠한 문의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정보를 알고 전화를 하였는지 물어보니 아파트건설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질문] 아파트건설사가 부동산중개업소에게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 건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처리자(아파트건설사)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제3자에게 제공이 허용됩니다. 비록 아파트건설사가 입주자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제공한 것 일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분양계약 체결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제공하는데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결론] 아파트건설사는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 체결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시나리오 6]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금융분야	민감정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개인의 의료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제] 보험사 및 의료기관 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법성 여부

[문제상황]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 일체를 제공받아 갔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확인절차라고는 하지만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을 복사해 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는 병원으로부터 보험계약자의 의료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정보주체 본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허용됩니다.

「의료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정보주체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의료법」 등에서와 같이 환자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의료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정보주체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의료법 제21조제2항제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및 제14조

[시나리오 7]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공공기관	일반정보

공공기관은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된다?

[주제] 민원 처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문제상황] 제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 상점의 위법행위를 알게 되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1주일 후 인근 상점에서 왜 민원을 넣었냐며 항의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원을 제기한 관할 구청에서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 관련 정보를 문제의 상점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민원제기 시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구청에서 민원인의 정보를 피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은 민원사항의 내용 및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결론] 공공기관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의 신상정보를 피민원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나리오 8]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공통분야	일반정보

영업의 양도·합병 시, 통보 없이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

[주제] 사업을 양도하면서 개인정보 이전사실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문제상황] 제가 회원가입 되어 있는 OO회사에서 △△회사로 홈페이지 등 영업 일체가 양도되었습니다. OO회사에서는 회사의 소유주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고, 홈페이지 가입 시 기재한 저의 개인정보도 모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로 항의를 하였더니 회원 탈퇴를 시켜주면 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질문] 회사가 고객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영업일체를 다른 회사에 양도해도 되는 건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처리자(회사)는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FAX,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 양수자 등)의 성명(법인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는 물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치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방법과 절차에 관해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영업의 양도·합병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자 및 영업 양수자 양측이 모두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자가 이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영업 양수자 측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OO회사 또는 △△회사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으나, 정보주체(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 양수자 등)의 성명(법인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는 물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치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방법과 절차에 관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Tip] 영업의 양도·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양도자 및 양수자 모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자 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시 반드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를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시나리오 9]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고유식별정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개인정보 이용?

[주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문제상황] 저희 단체는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 기부자들로부터 연말정산에 활용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기부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제34조), 동법 시행규칙은 ‘기부금 영수증’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별지 제45호의2 서식). 여기에는 기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 기부금 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 별도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시나리오 10]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고유식별정보

주주명부에 주주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기재?

[주제] 주주명부 작성·비치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이용

[문제상황] 주식회사에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주명부에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으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등,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 주식회사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명부를 기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시나리오 11]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일반정보

기업 계열사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주제] 기업 그룹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범위

[문제상황] 12개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그룹에서는 본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하여금 다른 계열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도 총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본사와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에서 계열사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통상 기업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그 계열회사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며, 각각의 계열회사가 사업 목적이나 범위,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론]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라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과 범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각기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자신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시나리오 12]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cctv	공통분야	영상정보

찜질방 휴게실에는 CCTV 설치가 가능하다?

[주제] 찜질방 휴게실(마루)에 CCTV를 설치 가능 여부

[문제상황] 대중목욕탕이나 화장실 등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찜질방 측에 문의하였더니, 도난 등의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합니다.

[질문] 찜질방 휴게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고 휴식을 취하는 찜질방 휴게실(마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로 보기 어렵고 다중이용시설로 범죄예방(물품도난 등) 및 시설안전·화재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한 이용객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 찜질방 휴게실(마루)은 옷을 입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Tip]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는 목욕장업의 경우에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외의 시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시나리오 13]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유출·침해·분쟁조정	공통분야	일반정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주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문제상황] 대형마트에서 패밀리 카드 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전화를 받게 되었고, 해당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문의하자 대형마트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 알아보니 신청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입력하였다고만 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러한 문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에서 해결 할 수 있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외적 수단으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누구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02-405-4710, kopico.or.kr)에 전화나 서면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만약 분쟁조정 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조정의 처리가 중지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02-405-4710, kopico.or.kr)에 전화나 서면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ip]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http://www.kopico.or.kr>)

[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

[시나리오 14]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공기관	일반정보

‘세대주’앞으로 발송되는 정책홍보물은 위법 행위?

[주제] ‘세대주’를 수신인으로 정책홍보물 발송

[문제상황]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현황과 추진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책홍보물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편물에 수신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주소만 기입한 후 받는 사람을 ‘세대주’로 하여 발송하고자 합니다.

[질문] 수신인을 ‘세대주’로 하여 지자체 주민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주소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보기가 어렵고, 세대주와 같이 불특정인을 수신자로 하여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주소만을 수집하여 수신인을 ‘세대주’로 하여 정책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시나리오 15]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공기관	고유식별정보

법정서식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주제] 법정서식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필요 여부

[문제상황]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정서식을 이용한 신고서나 신청서 등을 접수받고 있는데, 신고서나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서 신청서나 신고서를 접수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처리자(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서나 신고서를 접수받는 것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신청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 항목이 있다면 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서식을 이용한 신청서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시나리오 16]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공기관	일반정보

행정기관 간의 민원 이관 시 개인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주제] 민원을 이관한 행정기관의 민원인의 개인정보 이용

[문제상황] 제가 A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었는데 민원 제기 후 B지방자치단체 민원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B지방자치단체에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고, 연락처를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A지방자치단체에게 문의하니, 민원이 이관되어 저의 개인정보를 B기관에게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질문] A기관은 민원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B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건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결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기관은 접수된 민원이 B기관 소관인 경우 민원인의 동의 없이 소관기관인 B기관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나리오 17]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교육분야	일반정보

급식비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 명단 제공 시 학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제] 학교의 요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의 명단 제공

[문제상황]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보호가정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직접 학교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학교에서는 급식비 청구 등을 위해 급식비가 면제되는 학생을 알아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급식비지원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 등)의 명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의 명단을 학교에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학생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상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인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의 명단을 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보호가정의 명단을 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법령상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학교급식법 제9조

[시나리오 18]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공공기관	일반정보

통계작성을 위한 주민현황 자료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제] 통계목적으로의 개인정보 제공

[문제상황] 저희 기관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령별, 출생연도별, 출신지역별 주민현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들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는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주민의 현황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연령, 출생연도, 출신지역 등에 따라 구분지어 조사한 현황은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결론] 지방자치단체는 통계작성을 위한 경우 지역주민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연령별, 출생연도별, 출신지역별 주민 현황을 요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주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호

[시나리오 19]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공기관	일반정보

공공기관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관소식지를 발송할 수 있다?

[주제] 공공기관의 소식지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문제상황] 저희 기관은 산업진흥정책의 수립, 규제 개선 및 관련 산업시장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기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관련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기관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계획 중인 사업 등을 안내하고,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이벤트를 알리는 소식지를 매월 발행하려고 합니다. 소식지 수령대상은 저희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고객 및 이해관계자이며, 업무수행을 하면서 수집한 이메일주소로 소식지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질문] 공공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관 소식지를 발행해도 되는 건지요?

[해결방법]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의 수집목적에 위해서 이용하여야 하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수집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한 업무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당초 업무목적이 아닌 소식지 등의 발송 목적으로 고객의 이메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공공기관이 기관 홍보나 소식지 발송 등을 위해서 고객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려면 해당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시나리오 20]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공기관	일반정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위법?

[주제] 지방자치단체의 만족도 조사를 위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이용

[문제상황] 저희기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신청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신청 시 수집한 민원인의 연락처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민원인의 정보를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에 관한 만족여부 등을 조사하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령상 소관업무에 따른 정책·사업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소관업무수행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조사대상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시나리오 21]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공공기관	영상정보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에게 CCTV 자료 제공?

[주제] 감사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문제상황]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자체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에 필요하다며 전산자료, 전화기록, 컴퓨터 사용기록, CCTV 영상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CCTV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가 제한되어 있고 설치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을 감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공공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등이 포함된 관련 자료(전산자료, 전화기록, 컴퓨터 사용기록, CCTV 영상자료 등)를 자체감사기구에게 제공해도 되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목적범위를 넘어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게 자체감사를 위하여 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관계 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체감사 대상인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감사기구에서 감사 목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감사기구가 요구한 CCTV 영상을 포함한 관계 서류 등(전산자료, 전화기록, 컴퓨터 사용기록, CCTV 영상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Tip]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공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 범위를 판단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0조

[시나리오 22]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CCTV	주택관리분야	영상정보

이웃집 CCTV에 우리 집이 촬영되고 있다면?

[주제] CCTV를 설치하여 사유지 촬영

[문제상황] 민원인의 집과 이웃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웃집은 민원인의 집 뒷마당과 앞마당 방향으로 CCTV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단순히 민원인의 마당이나 집 일부를 보이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집을 향해 설치되어 있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질문] 다른 집의 마당 등 사유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공개된 장소(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는 골목길, 지하철 역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주택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로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적공간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사적 공간에서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할 초상권을 가집니다.

[결론]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CCTV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집이 촬영되지 않도록 CCTV 촬영범위 및 각도를 조절하여야 합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헌법 제10조, 제17조, 형법 제316조

[시나리오 23]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고유식별정보

영업차 백화점 방문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주제] 시설물 출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정당성

[문제상황]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은 납품 계약을 맺은 백화점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테리어 집기를 배송하고, 백화점 영업이 종료된 후 직접 매장 세팅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납품 계약을 맺은 백화점에서는 백화점 출입시 보안팀을 방문하여 방명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방명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시간 종료 후에 백화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업 목적으로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고, 보안을 위하여 출입자 및 출입여부 기록이 필요하다면 방문자의 이름, 연락처, 소속기관만을 기입하도록 하여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해결방법]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처리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입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야 하므로 필요 최소한이 아닌 정보는 가급적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백화점 측이 출입 보안 목적으로 업체직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시나리오 24]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인사업무분야	인사정보

회사 입사지원자에게도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주제] 회사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상황] A회사는 직원 채용을 위하여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기업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해결방법]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은 고용계약의 사전 단계로 계약 행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기업 등은 입사지원에 필요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민감정보(종교, 장애여부 등)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거나 우대하는 경우,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여부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입사지원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결론] 입사지원은 근로계약 체결의 일부로 입사지원자의 동의 없이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단, 주민등록번호는 입사 후 수집 가능)

[Tip] 입사 후 4대 보험 가입, 소득공제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

[시나리오 25]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CCTV	의료분야	영상정보

CCTV 촬영 거부하면 진료를 못 받는다?

[주제] 치과 진료실 내부에 CCTV녹화 가능여부

[문제상황] 개인이 운영하는 E치과는 개원 시부터 환자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진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해 오고 있으며, 환자로부터 CCTV 촬영에 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E치과 진료실은 개방형으로 한 대의 CCTV를 통해 모든 진료장소가 녹화되고 있어, CCTV 촬영에 동의하는 환자들만 진료하고 있습니다.

[질문] 진료실 내부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의 진료 거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해결방법] 일반적으로 병원의 진료실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출입하므로 진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결론] 분쟁에 대비하여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진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Tip]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시나리오 26]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CCTV	의료분야	영상정보

입원실이나 요양원에 CCTV 설치는 정당하다?

[주제] 병원 또는 요양원의 입원실에 CCTV 설치 가능 여부

[문제상황] 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 환자의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병원 입원실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침실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입원실이나 요양원 입소자의 침실은 환자의 생활공간에 해당되는 곳으로 CCTV 설치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입원실이나 요양원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CCTV가 설치된 각 장소마다 CCTV 설치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는지요?

[해결방법] 병원의 입원실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생활공간인 침실 등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CCTV 안내판을 설치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정보주체의 알권리 및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병원 입원실 또는 요양원 침실에서 신체의 주요부위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크다면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병원의 입원실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생활공간인 침실 등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환자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체의 주요부위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크다면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Tip] 공개된 장소 :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 등의 시설,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비공개된 장소 :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등

[관련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5조제2항

[시나리오 27]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일반정보

거래처에서 받은 명함을 신제품 홍보목적으로 이용한다?

[주제] 영업사원이 거래처 구매담당자와 명함 교환 후 이용

[문제상황] 회사에서 대외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방문한 거래처 담당직원과 명함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영업사원이 거래처 방문 시 구매담당자로부터 받은 명함을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여 회사의 신제품 등을 소개하는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염려가 됩니다.

[질문] 회사의 영업사원이 거래처 구매담당자와 명함을 교환했을 경우, 이를 회사 신제품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결방법] 명함은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명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으로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함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적 관계, 업무 관계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관행적인 행위이므로, 특별한 조건을 명시하여 명함을 교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함을 제공한 정황에 비추어 보아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업무목적으로 거래처 담당자와 명함을 교환한 경우 정황에 비추어 상대방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 신제품 홍보 목적의 영업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제3항

[시나리오 28]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교육분야	일반정보

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가능하다?

[주제] 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문제상황] 우리기관은 만 14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그림 그리기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회 개최 시, 참가 유의사항 및 대회 결과 등을 알리기 위하여 대회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질문]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회 개최 시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해결방법]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대회참가자의 연락처 등은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대회와 무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참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14세 미만의 참가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해당 대회 개최에 필요한 참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Tip]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는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시나리오 29]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CCTV	공통분야	영상정보

건물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부착은 어떻게?

[주제] 건물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대표 안내판 부착 가능 여부

[문제상황] 현재 건물 2개 층을 임대 사용 중이며 각 층 출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을 부착하고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설치 대수 및 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곳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영상정보처리기기 한 대당 안내판을 각각 부착해야 하는 것이지요?

[해결방법]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백화점, 역사 등 규모가 큰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Tip]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자료실 > 지침자료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24조,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시나리오 30]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의료분야	고유식별정보

연대보증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수 없다?

[주제] 환자 연대보증인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상황]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연락가능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 환자의 의식 불명,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병원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병원비 등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 내부 규정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러한 경우 진료목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가요?

[해결방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목적을 위해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비 수납을 위해 내부규정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리 및 불이익의 내용을 연대보증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론] 연대보증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Tip]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환자의 입원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 의료법 제15조

[시나리오 31]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CCTV	공통분야	영상정보

주차장 CCTV 영상 확인도 개인정보침해?

[주제] CCTV에 녹화된 영상 열람 요청

[문제상황] 주차장 입구에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다는 안내판을 보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불일을 본 후 돌아와 보니 제 차에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주차장 내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제가 없는 동안 CCTV를 통해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 주차장 관리인에게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를 바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해결방법]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를 열람 청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이 포함된 영상정보는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시간에 한하여 차량파손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파손된 차량 주변이 찍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ip] 이런 경우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영상정보 열람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입회하에 타인의 정보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료실 > 지침자료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시나리오 32]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CCTV	공통분야	영상정보

출입이 통제된 작업장 내 CCTV설치도 제약을 받는다?

[주제] 작업장 내에 CCTV 설치·운영

[문제상황] 저희 회사는 소규모 중소기업체로 작업장에 출입통제를 하고 있으나 외부인의 작업장 출입이 많습니다. 외부인은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다 보니 자칫 도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 작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싶은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요? 적법하게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방법] 도로, 공원,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정보주체가 접근·통행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직원 등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 공장 등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출입이 통제되는 작업장 내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Tip]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사업장 내 근로자감시 설비의 설치에 노사협의회가 의무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0조제1항제14호)

☞ 자료실 > 지침자료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25조

[시나리오 33]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위탁	공통분야	일반정보

수탁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위탁사는 아무책임이 없다?

[주제] 수탁회사의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문제상황] A사는 자신들의 고객관리업무를 B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B사가 고객정보를 TM업체에 팔아넘겨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사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A사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B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며 손해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회원가입을 한 곳은 A사인데 A사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유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가입회사(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서는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도록 하여 위탁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은 부진정 연대책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수탁자나 위탁자 중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는 위탁자(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시나리오 34]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인사업무분야	일반정보

건설회사는 현장직원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주제] 회사에서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정보 요구

[문제상황] 건설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부상당하는 등의 응급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회사는 이러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가족의 성명, 휴대폰번호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회사가 직원가족의 핸드폰번호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회사가 사고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 가족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해결방법]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및 근로자 복지 제공 등 사용자의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가족수당의 지급 등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 동의 없이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처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회사가 사고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직원 가족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건설회사가 사고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직원 가족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시나리오 35]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주택관리분야	일반정보

아파트 입주민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있다?

[주제]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문제상황]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체로부터 일부 주민의 연락처를 수령하여 전화로 재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전화를 받은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질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의 정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할 수 있나요?

[해결방법]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주택관리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해당됩니다. 주택관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해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 업무를 처리하며, 이를 위하여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카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로 이와 관련한 최종 권한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는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라 수탁자인 관리사무소에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입주자대표회의의 수탁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개인정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집 동의 시 제시한 목적을 벗어나서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6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시나리오 36]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의료분야	민감정보

네트워크 병원은 환자정보 공유해도 된다?

[주제] 네트워크 병원에서 정보 공동 활용

[문제상황]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며 주요 진료기술이나 마케팅, 재료 구입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 병원은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공통으로 구축하여 환자의 진료내역 및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성형외과로부터 성형과 관련된 홍보 전화나 SMS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네트워크 병원의 각 지정병원들은 환자의 진료기록과 개인정보를 공유해도 되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진료기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일률적으로 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공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다른 지점에 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네트워크 병원에서 의료법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다른 지점에 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Tip] 네트워크 병원을 구성하는 각 지정병원은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각각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의료법 제21조

[시나리오 37]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안전성 확보조치	시스템분야	고유식별정보

업무용 PC에서 개인정보 저장, 반드시 암호화!

[주제] 업무용 PC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문제상황] 마케팅기획부서의 직원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업무 편의를 위해 고객관리시스템(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고객정보 중 최근에 등록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PC로 다운로드하여 엑셀과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 보관·사용한 후 1주일 단위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의 경우 DB에 접근·사용시 제어나 암호화가 모두 적용되어 있으나, 업무용 PC에서는 DB와 같은 암호화 기능이 없습니다.

[질문] 업무용 PC에서 고유식별번호나 바이오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암호화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전송 또는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PC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정보 중에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등과 같이 암호화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나 DRM 등과 같이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한글이나 엑셀과 같은 상용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는 안전성 조치가 갖추어진 정보시스템에 보관하여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출 및 침해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PC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경우 상용프로그램(한글, 엑셀 등)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거나, DRM 등과 같이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암호화해야 합니다.

[Tip] 자료실>지침자료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9조, 시행령 제30조

[시나리오 38]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파기	공통분야	일반정보

사이트 회원 탈퇴해도 개인정보는 남아있다?

[주제] 온라인 사이트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 삭제

[문제상황] 1년 전 00동호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였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00동호회를 거의 찾지 않게 되어 회원탈퇴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에서 회원탈퇴를 하였습니다. 사이트 가입약관에 따르면 ‘탈퇴 시 즉시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파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탈퇴한 이후에도 00동호회에서 각종 안내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시스템에서 탈퇴회원의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그대로 저장·이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회원탈퇴 후에도 동호회에서 안내메일과 SMS를 보내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처리자(00동호회)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약관에서 회원탈퇴 즉시 자동 파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호회 회원이 회원 탈퇴를 한 경우 보유기간이 경과하고 개인정보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이므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합니다.

[결론] 약관에서 회원탈퇴 즉시 자동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기하지 않고 안내메일과 SMS를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Tip]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및 제21조

[시나리오 39]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금융분야	일반정보

개인정보 처리동의를 있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주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 신용정보 처리 동의

[문제상황]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 인가요 ?

[해결방법]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지만,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이미 받았다면, 해당고객이 보험금 청구시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보험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나리오 40]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위탁	금융분야	일반정보

금융회사는 모든 위탁업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주제]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하는 방법

[문제상황] OO금융회사는 A사에게 고객관리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탁하고, B사에게는 회계시스템 개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고, 회계시스템은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의 처리 없이 단순한 회계정보만 다루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회계시스템과 같은 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업체인 B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비용절감,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서, 이에에는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업무 그 자체를 위탁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의 이용 등이 수반되는 일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처리를 수반하는 고객관리시스템 개발위탁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되고, 고객정보나 개인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회계시스템 개발 위탁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 위탁자인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A사의 정보를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업무를 위탁받은 B사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Tip]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업장과 같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과 관보나 위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시행령 제28조

[시나리오 41]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교육분야	일반정보

초등학생 학원 등록 시 학부모 정보 수집은 정당하다?

[주제] 학원에서 수강생 학부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문제상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00보습학원은 수강신청서에 학생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연락 가능한 학부모의 성명과 휴대폰번호도 함께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0학원에 등록하려는 학생들 중 일부 학생이 부모님의 정보가 왜 필요한지 반문하며 학부모의 성명과 휴대폰번호 기입을 거부하였습니다.

[질문] 보습학원 등록 시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능한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보습학원)는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학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강의진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학생의 교육지도와 관련한 학부모의 이름이나 연락처 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그와 관련 없는 직업, 소득 등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집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학습지도가 아닌 학원의 홍보 및 마케팅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별도로 명시한 후 학부모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가 학습지도와 관련 없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반대하는 경우, 학원은 이를 이유로 수강신청을 거부하는 등 교습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결론] 초등학생의 학원 등록 시 학부모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는 해당학생의 교육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학부모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수강생 대장),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시나리오 42]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일반정보

협회 인명부 개인정보도 동의가 필요하다?

[주제] 협회에서 인명부 발간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문제상황] 저희 00협회는 매년 소속 회원사 임직원의 성명, 직위, 연락처, 사진이 포함된 인명부를 제작하여 회원사에게 배포해 왔습니다. 협회에서 회원사 소속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직접 징구하거나, 회원사를 통해 소속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공받아 인명부를 발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질문] 협회에서 위의 2가지 방법으로 인명부를 제작·발간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협회)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는 인명부에 포함되는 회원사 임직원에게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사가 협회를 대신하여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협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 인명부가 홍보 마케팅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회원사 임직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협회는 인명부 발간을 위해 인명부에 포함되는 회원사 임직원에게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회원사가 협회를 대신하여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 인명부를 제작·발간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시나리오 43]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일반정보

제품 판매 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주제] 제품 판매 시 리콜의무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문제상황] 저희 회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 인도 후 10년 동안 리콜 및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온라인 판매 없이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면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 판매 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해결방법]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귀사가 제조한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사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손해를 배상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제품 판매 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현재 손해를 배상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제품 판매 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시나리오 44]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주택관리분야	고유식별정보

아파트 차량 등록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주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인 개인정보 수집

[문제상황]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인의 차량을 등록한 후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으며, 입주인외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량등록을 하려는 입주인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사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차량등록증에는 차주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함부로 제출하기가 꺼려집니다. 게다가 전체 5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여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우려됩니다.

[질문] 차량등록을 위하여 입주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해결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된 차량이 입주인의 차량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필요한 연락 등을 취하기 위하여 차량 등록시 해당 입주인의 차량번호,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간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주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는 있으나, 단순한 차량등록을 위해 입주인 또는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은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차량등록증을 수집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결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입주인에게 제출받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24조

[시나리오 45]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위탁	인사업무분야	인사정보

급여담당직원은 업무상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주제]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문제상황] 회사의 급여담당직원은 직원들의 퇴직신탁 및 퇴직연금 등의 마련과 직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급여담당직원이 업무상의 목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번호 등)를 해당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하였습니다.

[질문]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해결방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제도에 관한 업무는 ‘사용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을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복지라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위탁에 해당됩니다.

[결론]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은 사용자의 의무이고, 사용자가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위탁에 해당됩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시나리오 46]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위탁	의료분야	민감정보

의료기관이 외부 검사기관에 환자의 개인정보도 제공?

[주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 여부

[문제상황]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전문검사기관에 환자의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대상물과 환자의 개인정보를 전문검사기관에 제공하고, 전문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의료기관에 회신하여 줍니다.

[질문] 의료기관이 외부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면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을 위한 것이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이후에는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반면,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위탁 후 수탁자는 여전히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환자의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지만, 장비 및 인력 등의 이유로 외부 검사기관에 환자의 검사물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가 수반되는 업무위탁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등 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결론] 환자의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 검사기관에 환자의 검사물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가 수반되는 업무위탁에 해당합니다.

[Tip] ☞ <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준수사항 >

1. 문서(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양식 참조)에 의하여야 함
2. 위탁하는 업무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홍보·마케팅 목적은 개별고지)
3. 수탁자 교육 및 관리 감독

☞ 자료실> 참고자료 [양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시나리오 47]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CCTV	의료분야	영상정보

응급실 진료 및 치료실에 CCTV 허용?

[주제] 응급실 내 진료실 및 치료실에 CCTV 설치

[문제상황] 음주환자, 조직폭력배 및 불량배 등이 진료중인 의료인에게 폭언, 폭행과 응급실 기물파손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 합니다. 위급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응급실 내 진료실과 치료실에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해결방법] 병원 응급실 내의 ‘접수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보호자 등이 비교적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 내의 진료실, 치료실 등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장소에는 촬영대상 정보주체(환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병원 응급실 내의 진료실, 치료실 등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환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5조

[시나리오 48]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의료분야	고유식별정보

인터넷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주제] 인터넷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문제상황] 00대학병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예약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는 예약게시판을 통해 희망진료일, 희망교수를 선택하고, 증상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전화예약센터 담당직원은 관리자모드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 예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예약게시판에 예약게시물이 게재되면 전화예약센터에서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하여 일일이 진료예약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질문] 병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에 주민등록번호는 진료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저장되지 않으며, 진료예약업무담당자가 관리자모드로 로그인하는 경우에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해결방법] 병원이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원활한 진료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진료예약을 받는 경우에 해당 환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환자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통해 충분히 본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예약을 위해 반드시 수집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병원의 내부 업무 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병원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이나 진료예약 시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시나리오 49]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주택관리분야	일반정보

재개발사업 진행 시 조합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주제] 재개발사업 진행 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총회 또는 회의록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관련

[문제상황] 현재 거주 지역이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아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추진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을 공개하고,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기록 등을 통지하려고 합니다.

[질문] 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을 공개하고,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기록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해결방법]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방법, 열람·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는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또는 관련 자료의 변경을 공개하고,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기록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연락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1조

[시나리오 50]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의료분야	민감정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진료 받을 수 있다?

[주제] 진료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여부

[문제상황] 심한 일교차로 감기증상이 있어 집 근처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진료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없어 진료비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질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해결방법]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전화번호의 수집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환자의 진료예약시간 변경, 병원 휴진안내, 처방전 오류 등 진료와 관련하여 비상시 연락을 위해 환자의 전화번호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환자의 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진료목적 범위를 벗어난 병원소식, 예방접종, 건강검진 안내 등 병원의 홍보목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작성, 처방전 작성 및 교부, 의료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료목적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시나리오 51]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CCTV	주택관리분야	영상정보

CCTV 설치 시 안내판은 필수?

[주제] CCTV 안내판 부착 의무

[문제상황] 제가 소유한 건물의 상가 및 주차장 등에서 도난사고나 시설물 훼손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질문]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어디에 부착해야 하며, 안내판에 기재할 사항이나 별도의 안내판 규격이 정해져 있는지요?


[해결방법]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설치하면 되고 별도의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CCTV마다 안내판을 부착할 필요는 없으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안내판에 대한 별도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Tip]  안내광장-CCTV조치사항-(화면하단) 『CCTV안내판 다운로드』

 자료실 > 지침자료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시행령 제24조

[시나리오 52]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안전성확보조치	시스템분야	고유식별정보

DB 접속기록도 암호화?

[주제] DB 접속기록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문제상황] 우리 회사는 개인정보 등이 보관된 DB에 대한 접근을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DB 접속 기록과 접속 결과를 보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보관하는 접속 기록 및 접속 결과에는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DB 접속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해야 하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바이오정보 및 비밀번호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안전성확보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DB 접속 기록 및 접속 결과에 암호화 대상정보(고유식별 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결론] 안전성확보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DB 접속 기록 및 접속 결과에 암호화 대상정보(고유식별 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시나리오 53]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인사업무분야	일반정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해도 된다?

[주제] 단체교섭에 필요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여부

[문제상황]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에 필요한 조합원의 급여내역, 근태현황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것은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직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하니, 노동조합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조합원의 동의서를 받아오겠다고 합니다.

[질문]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직원의 급여내역, 근태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해결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성실한 교섭 의무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금지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노동조합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노동조합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동의서를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신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의 급여내역, 근태현황 자료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시나리오 54]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파기	의료분야	일반정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록물은 합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

[주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여부

[문제상황] 저는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원에 기록물관리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는 전문요원의 심사 없이는 기록물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관기간이 지난 의무기록을 파기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원에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친 후에 의무기록을 파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즉시 파기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질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어느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무기록 중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 배치된 전문요원의 심사를 받은 후에 파기하여야 합니다.

[결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및 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나리오 55]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공통분야	일반정보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것은 적법이다?

[주제]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에 해당 여부

[문제상황] 우리 회사는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동의를 받고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성명은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만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를 의미합니다.

[결론] 휴대전화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정보주체와 직접 연락이 가능한 contact point로 홍보·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8조

[시나리오 56]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열람,정정,삭제	금융분야	일반정보

보험회사의 개인정보는 삭제되지 않는다?

[주제] 개인정보의 삭제 요청 방법

[문제상황] 몇 년 전 보험회사에서 무료로 자동차 점검을 해주겠다고 하여 차주 및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을 알려줬습니다. 자동차 점검을 받고 난 이후 보험회사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험 상품 소개와 가입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이미 다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니,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삭제는 할 수가 없고 대신 연락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삭제요청 이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여전히 자동차 보험이 만기되었다며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질문]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나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보험사)는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의 열람,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 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Tip]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또는 ☎ (국번 없이)11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시나리오 57]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인사업무분야	일반정보

복리후생을 위한 임직원 가족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주제] 복리후생을 위해 임직원의 가족정보 수집 시 동의 여부

[문제상황]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야근 교통비, 동호회운영비, 자격증수당, 자녀 학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임직원에게 자녀의 학비와 가족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임직원이 가족을 대표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가족 개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해결방법]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에 따라 회사는 자녀 학비 지원, 직계존속 건강진단, 주택지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 및 연령확인 등을 위한 증명서 제출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도록 한다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회사는 임직원 및 임직원의 가족에 대한 복리후생 제공을 위하여 가족의 개인정보(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동의 필요)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시나리오 58]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교육분야	일반정보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수상내역 게시, 동의가 필요하다?

[주제] 사진과 수상내역 홈페이지 공개

[문제상황] 학생들이 경시대회 등에서 수상을 하는 경우 수상 정보 및 개인정보(학년, 반, 성명)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나 외부에 알리기 위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사들은 이렇게 공개를 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질문] 학생의 수상 정보와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해결방법] 학교에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학생이나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수상 정보와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원활한 학교 행정을 위하여 학기 초, 학년 초, 입학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각각의 사안별로 동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일괄동의를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 학생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인 학생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시나리오 59]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위탁	공통분야	일반정보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는 어떻게?

[주제] 업무 위탁 시 문서에 의한 처리 방법

[문제상황] 우리 회사는 웹사이트를 기획·제작하고 운영하는 회사로서 통상적으로 공문이나 이메일, 보안서약서, 수탁업무확인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업무위탁에 관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문서가 필요한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를 활용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고 서명이나 직인을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 문서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를 활용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고 서명이나 직인을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Tip] 자료실 > 참고자료 『 [양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시나리오 60]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안전성확보조치	시스템분야	일반정보

내부 시스템 문제 발생 시 DB암호화 안 해도 된다?

[주제] 개인정보 암호화의 위험도 분석

[문제상황] 회사에서 직원의 인사정보와 고객사의 대표자·업무 담당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DB암호화 등의 처리수단 도입을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데이터가 많은 테이블의 경우 ERP시스템의 DB조회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부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DB암호화를 해야 하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에 따라 ERP 등 내부정보시스템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의 26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에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DB의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여야 합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시나리오 61]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일반정보

회원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주제] 개인정보의 이용 동의 방법

[문제상황] 저희 마트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멤버십카드를 발급하여 구매금액에 따른 적립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고객이 점포를 방문하여 구매한 경우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멤버십카드 소지자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멤버십 카드 회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결방법] 멤버십 카드 회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 당시 수집한 개인정보와의 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당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결론] 회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집한 고객정보와 대조·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시나리오 62]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열람,정정,삭제	의료분야	민감정보

병원 진료기록 삭제 요청하면 즉시 삭제 가능하다?

[주제] 병원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가능 여부

[문제상황]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을 물어 봐서 알려주었습니다. 진료과정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앞으로는 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병원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없으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가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한 경우 병원에서 삭제하지 않고 10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병원)는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서 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의료법에 따라 최소한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에 대하여 환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결론] 병원을 더 이상 이용할 계획이 없는 환자가 병원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간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할 수 없습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시나리오 63]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일반정보

만족도 조사를 위해 고객정보를 이용해도 된다?

[주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

[문제상황] 이태리음식 전문점인 저희 매장은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예약접수 및 예약 확인을 위해 고객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약 후 매장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예약담당자의 친절도와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고객들로부터 만족도 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습
니다.

[질문]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약접수 시 수집한 고객의 연락처를 이용해도 되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계약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매장은 예약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객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정지 및 파기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홍보나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 예약접수 시 수집한 고객의 연락처를 이용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시나리오 64]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일반정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한다?

[주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 여부

[문제상황] 우리 회사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 및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입니다.

[질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정의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사업체(개인사업자 포함)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이나 사업체의 정보로서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정보로 처리되는 경우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이나 사업체의 정보인 사업장주소, 사업장전화번호, 대표자성명은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시나리오 65]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주택관리분야	일반정보

고객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기재는 어떻게?

[주제] 부동산 중개업소가 고객 정보를 관련 협회 및 사업자 단체와 공유 가능 여부

[문제상황]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개업소 단체 및 지역 사업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려야 하는데, 공인중개업소가 모든 업체를 동의서에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동종 사업자단체 및 동종 사업자’로 기재해도 되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공받는 자가 많아서 동의서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도의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는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결론] 동의서에 별도의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구체적 목록이 기재되어 있고, 고객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동의서에 ‘동종 사업자단체 및 동종 사업자’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Tip]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

[시나리오 66]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공통분야	일반정보

영업 양도 시 고객정보는 통지 후 제공?

[주제] 영업 양도에 따른 고객정보 제공 시 조치사항

[문제상황]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관리, 포인트 적립 및 이벤트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위해 고객 1천 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영의 악화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업계의 사람에게 소매점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소매점 양도 시 양수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그 동안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많은 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영업을 양도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양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

[해결방법] 영업의 양도·합병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자 및 양수자 양측이 모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양도하는 자가 이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양수자 측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FAX,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과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및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치 아니하는 경우 조치방법과 절차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시나리오 67]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주택관리분야	일반정보

조합은 업무 위탁 시 용역업체에 조합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용역업체에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여 서면 결의서를 받는 행위의 적법 여부

[문제상황] 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저의 개인정보를 조합에는 제공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의 용역업체의 홍보요원로부터 총회 개최에 대한 서면 결의서를 받으려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 제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용역업체의 홍보요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해결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하고,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장은 총회 개최 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결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업무위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용역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24조

[시나리오 68]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영상정보

개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타인의 영상정보를 촬영하였다?

[주제] 개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타인의 영상정보를 촬영

[문제상황] 몇일전 퇴근하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경로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시던 할아버지 두 분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 서 있던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몸싸움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다른 사람을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 아닌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바, 사적·개인적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다른 사람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시나리오 69]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주택관리분야	일반정보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합의를 공개한다?

[주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합의를 입주민에게 공개 가능 여부

[문제상황] 아파트 전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11월 주민동의서를 받아 ○○건설사와 고속도로 교통소음과 관련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고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1년 고속도로 확장 후 소음이 증가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한 합의를 현 재 입주민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2004년 합의서에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책, 동·호수, 성명, 서명 및 당시 합의서에 동의한 입주자의 동·호수, 성명,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합의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처리자(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2004년 합의를 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합의를 공개가능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합의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 입주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2004년 합의를 현 입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시나리오 70]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CCTV	공공기관	영상정보

CCTV 추가설치 시 목적이 동일하면 의견수렴 필요 없다?

[주제] 공공기관 CCTV 추가 시 의견수렴 여부

[문제상황] 공공기관에서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현재 15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많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15대의 CCTV로는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질문] 최초의 설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해결방법]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예고, 의견청취, 설명회 등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설치목적 내에서 단순히 적은 대수의 영상정보처리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촬영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치 목적을 변경하여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결론] 동일한 설치목적 내에서 단순히 일부 영상정보처리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촬영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없습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시행령 제23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

[시나리오 71]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교육분야	일반정보

학원 홍보를 위해 수강생의 개인정보 활용?

[주제] 학원 수강생의 합격 및 수상 내용을 학원홍보에 활용 가능 여부

[문제상황]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원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이 월등하게 향상된 수강생이나 각종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수강생의 사진과 이름, 학교 등을 학원 내부나 홈페이지, 현수막 등에 기재하여 특목고나 유명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다른 수강생들에게는 학습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학원 홍보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질문] 수강생 동기부여 및 학원 홍보를 위하여 수강생의 사진, 이름, 학교 등의 정보를 현수막에 기재해도 되나요?

[해결방법] 학원은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학원 홈페이지, 현수막 기재 등을 통한 홍보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목적외의 용도로 불특정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수강생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학원수강생의 개인정보를 학원 홈페이지, 현수막 기재 등을 통한 학원 홍보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은 당초의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강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 편]』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시나리오 72]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일반정보

동의 없이 고객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주제]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고객 전화번호 수정 가능 여부

[문제상황]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회사에 고객정보 정정을 요청하여야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고객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회사에 연락하여 자신의 정보를 정정하는 고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고객과의 연락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발신번호가 표시되는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기에 표시되는 고객의 발신번호가 등록된 전화번호와 다른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질문]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처리자(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고객이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고객에게 전화번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향후 변경된 전화번호로 수정하겠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 개인정보처리자가 발신번호 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의 전화번호를 현행화하여 관리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정보주체(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시나리오 73]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CCTV	인사업무분야	영상정보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근태관리에 이용한다?

[주제] CCTV 영상을 근태관리에 활용 가능 여부

[문제상황] 최근 일부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 신청을 해놓고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다 들어와 퇴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회사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영상정보를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요?

[해결방법] CCTV는 당초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야 하므로 당초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태관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를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를 통하여 근로모니터링 목적의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시설안전 및 화재와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 녹화된 영상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태관리, 부정행위 감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5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20조

[시나리오 74]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안전성확보조치	금융분야	고유식별정보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전산망에 보관 가능하다?

[주제]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내부 전산망에 보관 가능 여부

[문제상황] 우리 회사는 채권추심을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문서로 보관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에 따라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재발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회사 내부 전산망에 보관하여 관리하려고 합니다.

[질문] 수집한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내부 전산망에 보관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요?

[해결방법]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수집하고 전산망에 보관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접근 권한 제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결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여 스캔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29조

[시나리오 75]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인사업무분야	일반정보

직원채용 합격자 발표 시 개인정보 공개는 어디까지?

[주제] 합격자 발표 시 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문제상황] 우리 회사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채용전형과정에서 각 단계별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시 입사지원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입사지원자 중 한명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합격자 목록에 기재된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질문]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개인정보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해결방법]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입사를 지원한 회사의 정보와 연계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합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발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게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번호 또는 수험번호만 기재하거나 성명의 일부분을 홍*동(1977. 7. 7)처럼 마스킹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합격자 발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경우 응시번호 또는 수험번호만 기재하거나 성명의 일부분을 홍*동(1977. 7. 7)처럼 마스킹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시나리오 76]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위탁	인사업무분야	인사정보

복리후생 차원의 물품 구입 시 직원정보 제공해도 된다?

[주제] 직원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문제상황] 회사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복지차원으로 지급할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배송을 위하여 집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백화점 등 물품판매처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직원 복지차원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지급할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정보를 물품판매업체(백화점 등)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인 직원이나 직원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해결방법] 직원 복지 제공을 위해 물품의 구입 및 배송 등을 외부 판매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직원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그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을 직원 등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내부 간행물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내용은 관련 근로자에게만 공개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결론] 회사는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등에 대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이나 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제공 의무(법령상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참조)

[Tip] 자료실 > 지침자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시나리오 77]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의료분야	민감정보

의료 기관에서 진료와 관련된 증빙서류 발급 시 환자 동의 필요하다?

[주제] 의료 기관에서 환자의 기록 제공 시 동의 여부

[문제상황] 병원에서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여러 증명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에게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인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에 대해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병원에서 환자의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절차 이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도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제21조)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허용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 환자의 친족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 엄격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결론]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친족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정한 요건이 우선 적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제38조 및 시행령 제46조, 의료법 제21조

[시나리오 78]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안전성 확보조치	의료분야	민감정보

의료기록 보관, 규모와 상관없이 보호조치 필요하다?

[주제] 개인정보 서류의 물리적 보호조치 방법

[문제상황]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 및 관리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별도의 시설·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는 장소, 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수납장 등에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고, 또 수시로 진료기록을 꺼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소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보관 시설·장소,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해결방법] 의료기관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수시로 의료기록을 꺼내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일과 중에는 잠금장치를 열어둔 채 업무공간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일과 후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물리적 보관 장소를 반드시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정에 따라 수납장 등 보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무방합니다.

[결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비록 의원급 의료기관 등 소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나리오 79]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파기	금융분야	일반정보

상담만 했는데 개인정보 파기 않고 이용?

[주제] 보험 상담 후 미 가입 시 지속적인 보험가입 권유광고(TM)

[문제상황] 홈쇼핑 시청 중 보험광고를 보고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보험내용이라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여 보험가입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조건이 아니어서 가입은 하지 않았는데, 이후 보험사에서 모집권유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질문]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상담만 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보험사)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의 의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가입조건 등을 확인하는 상담만 하였을 뿐이고 이후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객 상담’이라는 최초의 개인정보 수집·처리목적에 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 해당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면 비구매자, 비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처리하여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시나리오 80]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공공기관	일반정보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요구 시 자료제출 가능?

[주제] A지자체의 지방의회 자료제출 가능 여부

[문제상황] A지자체는 지방의회로부터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중입니다. 지방의원이 A지자체 계약직·별정직 공무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전체 응시자 이력서 및 심사위원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요구 합니다.

[질문] 요구 자료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출해도 되는지, 만약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지요?

[해결방법] 지방자치법 제41조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과 그 요구를 받은 자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류제출과 관련한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A지자체에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A지자체는 제출 요구받은 자료 중 민감 정보 및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A지자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민감 정보 및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지방의회의 감사목적에 따라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제외)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Tip]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1항(지방의회는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④항(~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⑤항(~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24조, 지방자치법 제41조

[시나리오 81]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안전성 확보조치	시스템분야	일반정보

웹사이트 회원정보는 일방향 암호화 조치!

[주제] 개인정보의 일방향 암호화 관련

[문제상황]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에 가입중인 회원들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암호화 조치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질문] 웹사이트 회원 정보 암호화 작업 시, 시중에 판매되는 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하면 되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는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개인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외의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암호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암호화 대상 정보 중 ‘비밀번호’는 중복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일방향 암호화는 이른바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한번 암호화를 적용하면 다시 중복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결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내외 암호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채택한 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시나리오 82]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교육분야	일반정보

학원은 강사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주제] 학원 강사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문제상황] 학원에서 우수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학력이나 경력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예방을 위해 성범죄 경력 확인도 필요합니다.

[질문]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또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하고 싶은데 이 경우도 동의가 필요한지요?

[해결방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라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본인(학원 취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학원 측은 강사 지원자로부터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요구하여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라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학원 취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 편)』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시나리오 83]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안전성확보조치	시스템분야	일반정보

홈페이지 방문객이 게시판에 스스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했다면?

[주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경우 조치 방법

[문제상황] 협회에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물에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을 삭제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질문]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해결방법]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노출 및 타인에 의한 도용 등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게시판 안내문을 통해 게시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작성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부주의하게 게재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여 일부 마스킹 처리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홈페이지 운영자는 최대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홈페이지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면서 부주의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않도록 피해가능성 등에 대한 경고문을 사전에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Tip] 자료실 > 지침자료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Ver 4.0)』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시나리오 84]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고유식별정보

거래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주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번호의 수집 가능 여부

[문제상황]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는데,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계약서에 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항의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 계약의 안전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한 목적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개인사업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4조

[시나리오 85]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공통분야	일반정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거부 의사 없으면 동의 한 것으로 간주?

[주제] 동의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제상황] 회사에서 임직원이나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의 경우에는 인트라넷의 공지사항을 이용하고, 고객의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과 함께 ‘일정 기간까지 동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안내문을 통지 또는 발송한 후 임직원이나 고객이 동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등을 알려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증책임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는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의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

[시나리오 86]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교육분야	일반정보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교내 게시판에 공개해도 된다?

[주제]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 한 내용 공개 가능 여부

[문제상황] 우리 학교는 학생이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 학칙에 따라 교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처분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명의 학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교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의 성명, 소속, 징계처분의 내용을 교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려고 하는데 일부 교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 수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교내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이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해당 정보주체인 학생(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가급적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징계 받은 학생의 성명, 소속, 징계처분의 내용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교내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해당학생,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시나리오 87]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금융분야	일반정보

보험가입설계를 위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은 가능하다?

[주제] 보험 상담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가입설계서 발행에 이용 가능 여부

[문제상황]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묻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험 상품 내용과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설계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설계를 위해 고객의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와 범죄경력정보,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설계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사고경력, 병력 등의 건강·질병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결론] 보험설계사는 보험 상담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건강 및 질병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나리오 88]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교육분야	일반정보

학력조회 서비스를 통한 제3자 정보제공, 학생 동의 필요?

[주제] 대학의 학력조회 또는 부서 간 업무 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학생 동의 필요성

[문제상황] 대학교에서 학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내 부서들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함께 이용하는데, 주로 편입, 취업 등과 관련하여 다른 국·공립대학 또는 기업이 특정 학생의 학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기 위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를 받고자 하였으나, 일일이 학생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학교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기 초에는 학력조회 요청이 많아 다른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질문] 대학이 업무목적으로 학생의 개인정보를 교내 부서들이 같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학력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공립대학 또는 기업 등 제3자에게 학생의 학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학생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학교는 학사관리 등을 위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내부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동의 없이 학교 부서가 함께 학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학교는 학사관리 등을 위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내부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동의 없이 학교 부서가 함께 학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력조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학교는 학생의 개인정보인 학력정보를 국·공립대학과 공유하거나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시나리오 89]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교육분야	일반정보

학교는 동창회에 졸업생 정보 제공해도 된다?

[주제] 동창회의 요청에 따라 학교가 졸업생의 개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문제상황] 동창회는 졸업생간 원활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졸업생의 연락처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졸업생의 연락처 및 근황이 포함된 동창회 명부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창회는 학교 졸업생을 파악하고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학교에 졸업생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한 졸업생 정보는 성명, 학번, 학부 및 전공, 입학년도, 졸업년도, 핸드폰, 자택전화, 자택주소, 이메일주소, 직장명, 직장전화, 직장주소입니다.

[질문] 학교는 동창회의 요청에 따라 졸업생의 동의 없이 동창회가 요구한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학교)는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동창회는 별개의 독립된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동창회 명부를 발간하려는 동창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졸업생에게 제공받는자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학교는 해당 졸업생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동창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시나리오 90]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주택관리분야	일반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원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당?

[주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의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정당 여부

[문제상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 정보가 필요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근거로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의 명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동의 없이 토지 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공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결론]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합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시나리오 91]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금융분야	일반정보

채무보증인의 상속인에게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 가능?

[주제] 채무보증인의 상속인에게 원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 정당성

[문제상황] A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사업을 하기위해 국가유공자 신분으로 B를 보증인으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A는 어느 날부터 원리금을 미납하기 시작하여 은행은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해 A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번호는 변경되었고, 발송된 우편물은 수신자 미거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A의 보증인 B마저 사망하자 은행은 B의 상속인에게 A의 대부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며 부동산과 예금에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B의 상속인은 대부원리금 상환 요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은행에게 채무자 A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질문]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은 채무자 A의 연락처(변경 전 전화번호, 우편물 반송된 주소 등을 말함)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은행)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행은 이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A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A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대부원리금 변제와 관련한 상속인의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A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시나리오 92]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공통분야	일반정보

타기관이 대신 받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명확해야 한다?

[주제] 다른 기관이 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동의에 근거한 제공 가능 여부

[문제상황] A기관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공문을 B기관에 보내면서 이를 근거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문에는 동의한 자가 누구인지, 동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 B기관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이 명시된 공문을 근거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A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B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A기관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B기관이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받아 A기관에 제공해야 하지만, 제공하는 B기관과 제공받는 A기관이 상호 합의한 경우 A기관이 대신해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 B기관에 제출한 후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B기관은 A기관이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제공하여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시나리오 93]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공통분야	일반정보

자격증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가능?

[주제] 자격증 진위여부를 확인해주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문제상황] A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자격증시험 업무와 자격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B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자격검정업무와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기관은 A기관에서 수행하는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자격검정과목 일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B기관은 자격검정 대상자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자격증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A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질문] A기관은 B기관의 요청에 따라 A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취득자의 자격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나요?

[해결방법] A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자격증시험과 시험합격자의 자격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자격검정과목 면제를 위하여 자격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B기관에 알려주는 것은 A기관의 소관업무에 해당합니다.

[결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A기관은 자격증취득자의 동의 없이 기술자격검정 과목 면제에 필요한 자격증 진위여부를 B기관에 확인하여 줄 수 있습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시나리오 94]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위탁	공통분야	일반정보

관촉행사 위탁 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주제] 관촉행사 위탁 시 고지대상과 고지범위 및 고지방법

[문제상황] A사는 전화나 우편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정기세일 또는 사은품 증정행사 등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매 행사 때마다 직접 고객에게 안내할 수 없어, 이를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고객에게 텔레마케팅(TM)을 하거나 우편물(DM)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질문] 텔레마케팅(TM)을 하거나 우편물(DM) 발송업무를 위탁할 때, 고객에게 위탁업체를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알려야 하나요?

[해결방법] A사의 텔레마케팅(TM) 및 우편물(DM) 발송 등의 업무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4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객에게 알리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결론] A사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TM)를 위탁하고 있으므로,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시행령 제28조

[시나리오 95]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위탁	인사분야	인사정보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시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주제] 급여 관련 업무위탁 고지

[문제상황] A사는 급여 관련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급여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탁자인 외부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A사는 급여 관련 업무가 위탁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업체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하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A사)는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는 급여 관련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직원의 동의 없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A사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내부 직원들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인트라넷(사내 망)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시나리오 96]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처리방침	공통분야	일반정보

개인정보보호규정 내부관리계획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 개인정보보호규정과 내부관리계획의 관계

[문제상황] A사는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가입 시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회사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회사규칙으로 마련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A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규칙에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내부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

[시나리오 97]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제공	교육분야	민감정보

보건소에 학생의 양호실 이용기록을 제공해도 된다?

[주제] 아동의 진료기록 제공

[문제상황] 학교에서는 학생이 양호실에서 쉬거나 응급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학생의 이름, 학년 및 반, 증상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교를 6년간 계속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호실 이용 기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정보가 상당히 누적되게 됩니다.

[질문] 보건소에서 초등학생의 양호실 이용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며 학생의 양호실 이용내역을 요구할 경우 양호실 이용 기록을 제공해도 되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민감정보로 정의하면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요구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른 개인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호실 이용기록에는 학생의 이름, 소속 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는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에 양호실 이용기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결론] 학생의 건강관리기록 중 홍역, 결핵 등 법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건강 기록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양호실 이용기록을 제3자(보건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학생)가 만14세 미만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시나리오 98]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파기	인사업무분야	인사정보

채용 불합격자의 입사지원서 처리는 채용 종료 후 바로 파기?

[주제] 채용 불합격자의 지원서 보유가 채용 종료 후에도 가능한지 여부

[문제상황] A사는 신입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광고 기간 동안 상당량의 입사지원서가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입사지원서를 채용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파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채용 불합격자의 입사지원서는 채용 절차가 종료된 후에 바로 파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사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입사지원서를 통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채용되지 못한 입사지원자(채용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추가합격 여부 등 채용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를 향후 수시채용 등을 위해 일정기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불합격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A사는 추가합격 여부 등 채용절차와 관련한 처리목적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채용 불합격자의 입사지원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시나리오 99]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위탁	공공기관	일반정보

공공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 위탁 시 개인정보 제공해도 된다?

[주제] ○○공사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문제상황] ○○공사는 외부 리서치업체를 선정하여 전문가, 관계자, 참여자, 수혜자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공사에서 수집한 설문대상자의 성명, 소속,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을 리서치 업체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질문] ○○공사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위탁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만족도 조사에 이용하기 위하여 외부 리서치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요?

[해결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공사)는 법령상 의무 준수 또는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만족도 실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인 조사대상자의 동의 없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를 위탁한 외부 리서치 업체에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Tip]  <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준수사항 >

1. 문서(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샘플 참조)에 의하여야 함
2. 위탁하는 업무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홍보·마케팅 목적은 개별고지)
3. 수탁자 교육 및 관리 감독

 자료실> 참고자료 [양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시나리오 100]

처리상황별 단계	적용분야	정보 유형
수집·이용	인사업무분야	일반정보

회사는 인사·노무를 위해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주제] 회사의 인사·노무를 위한 직원의 개인정보 이용

[문제상황]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직원의 개인정보를 회사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직원의 임금지급을 위해서 직원의 이름, 은행계좌번호를 이용해야 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4대 보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 회사가 임금지급 및 4대 보험 처리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려면 직원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직원의 이름, 은행계좌번호 등 임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직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급여내역 등을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공해야 하며 이때 역시 직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회사는 임금지급 및 4대 보험 처리를 위해서 직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Tip]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